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제(지방자치단체)를 등록제(대한행정사회)로 변경 등〉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8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행정사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를 행정사회 등록제로 변경	3
2. 행정사 자격 없는 자의 행정사 업무 수행(또는 행정사 업무수행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34
3. 벌칙 및 몰수·추징 규정 신설	3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6.
3.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행정사회의 가입과 시·군·구의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및 윤리강화 등을 수행하는 자정기능과 행정사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제2항제1호 등).

나.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광고 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6조제2항제7호 등).

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한 벌칙규정 신설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Ⅲ. 검토의견

1. 행정사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를 행정사회 등록제로 변경

현행	개정안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등록)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업무를 하려면 제25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마친 후 행정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의2(등록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행정사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

현행	개정안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u>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u>	<u>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④ <u>행정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1조(등록거부) ① <u>행정사회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u>1.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u> <u>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u>3.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u>

현행	개정안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u>걱정지형의 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u> 4.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사회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u>행정사업무등록증</u>----- -----<u>“등록증”</u>----- -----<u>행정사업무등록의</u>----- ----- -----<u>등록된</u>----- --. ③ -----<u>등록이</u>----- ----- ----- -----<u>행정사등록거부에</u>----- -----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u>----- ----- -----<u>행정사회에 대하여 해당 행정사의 등록을 명하여야</u>-----.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u><신설></u>	<u>제11조의2(필요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폐업한 경우</u> <u>2.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u> <u>3.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u>
<u><신설></u>	<u>제11조의3(임의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u>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u>2.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u>
<u><신설></u>	<u>제11조의4(등록취소 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사회에 그 행정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u>

현행	개정안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신고확인증</u>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신고확인증</u>을 발급받은 사람은 <u>신고확인증</u>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등에게</u>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u>신고확인증</u>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u>신고확인증</u>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신고확인증</u>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게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증의 발급) ① 행정사회장은 행정사업무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 <u>등록증</u>----- -----. ② -----<u>등록증</u>----- -----<u>등록증</u>----- ----- -----<u>행정사회에</u>----- -----. 제13조(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 -----<u>등록증</u>----- -----. ② -----<u>등록증</u>----- -----. ③ -----<u>등록증</u>----- -----. 제13조의2(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u>행정사회는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행정사에게 등</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u>품위 향상</u>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u> ② <u>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1조의2제3호 및 제11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u>개업하려면</u>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등록을 한 후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시·군·구 단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행정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

현행	개정안
<u>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는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⑥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행정사회는 사무소의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종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7항에 따라 신고

현행	개정안
⑥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u>시장등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u>시장등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	<u>내용을 통지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u>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폐업신고) ① ----- ----- ----- ----- ----<u>행정사회에</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휴업하려면 <u>행정사회에</u>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u>품위 향상과</u>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등록변경의 통지) 행정사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u>등록과 품위 향상</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u>개업하려면</u>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u>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u>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 -----<u>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u>-----.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업무는</u>----- -----. 제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u> 행정사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	② ----- ----- ----- --. 1. <u>행정사업무등록 또는 법인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u>----- ----- 2.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현재 행정사 제도는 행정사가 업무를 개시하거나 폐업, 휴업, 업무 재개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

1)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등에 대한 행정사 업무 관련 신고제도를 대한 행정사회에 대한 등록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함)는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²⁾ 동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함.³⁾

행정사회와 유사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격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로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⁵⁾ 등이 있음. 동 단체들은 소속 자격사인

-
- 2)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가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법무사법」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사와 공인노무사의 업무개시 등과 관련한 각종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사와 공인노무사 제도를 관장하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동 단체들에 대하여 등록·등록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 그에 따른 등록명령·등록취소명령 등을 통해 제도를 관장하고 있음.6)7)

다.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6) 「법무사법」 제9조(등록 거부) ①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7)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③ (생략)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⑦·⑧ (생략)

개정안은 행정사와 관련하여서도, 법무사 및 공인노무사와 같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격사 단체인 행정사회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의 등록 업무를 행정사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사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행정사회에 등록거부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등록거부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회에 시정을 명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등에 대한 신고제를 행정사회에 대한 등록제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수리’를 ‘등록’으로,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무사법」 및 「공인노무사법」의 입법례와 유사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동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유사 입법례 비교]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10조(등록)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u>업무를 하려면</u> 제25조에 따른 <u>실무교육을 마친 후 행정사회에 등록</u>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갱신</u>할 수 있다. 이 경우 <u>갱신기간은 3년</u>으로 한다. 제10조의2(등록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u>행정사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u>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u>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u> 지체 없이 <u>등록</u>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u>등록증을 발급</u> 해주어야 한다.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u>업무를 하려면</u>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u>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u>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u>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u>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u>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u> 지체 없이 <u>등록</u>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u>등록증을 내주고</u>,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u>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u>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직무개시 등록신청서</u>를 법 제24조에 따른 <u>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u>해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u>등록증을 발급</u>해야 한다. 1. 공인노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행정사회는 <u>행정안전부장관</u>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u>에게 사무소 설치 사실을 <u>통지</u>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거부) ① 행정사회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u>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u>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u>자격이 없는 경우</u> 2. 제6조에 따른 <u>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하면 제66조에 따른 <u>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u>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의 <u>자격이 없는 경우</u>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u>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지도·감독 등) ④ 공인노무사회는 <u>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u>을 지체 없이 <u>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u>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하면 <u>등록을 거부</u>하여야 한다.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각 호> 1. 제4조의 <u>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사람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3. <u>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u> 4. <u>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② 행정사회가 제10조에 따른 <u>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u>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등록의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u>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u>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u>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강등(降等),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u>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u>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u>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u>등록된 것으로 본다.</u>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결격사유에 해당)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징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u>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u>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u>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u>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에 행정사등록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u>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u>을 할 수 있다. ④ <u>행정안전부장관</u>은 제3항에 따른 <u>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u>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해당 <u>행정사의 등록을 명</u>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필요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등록을 취소</u>하여야 한다. 1. <u>폐업</u>한 경우 2. 행정사가 <u>사망</u>한 경우 3. 제11조의4에 따른 <u>등록취소 명령</u>이 있는 경우 제11조의3(임의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u>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u>(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④ <u>대법원장</u>은 제3항에 따른 <u>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u>하면 <u>대한법무사협회</u>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u>등록을 명</u>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등록을 취소</u>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3호</u>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u>등록심사위원회</u>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u>폐업</u>한 경우 2. <u>사망</u>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u>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u>등록취소 명령</u>이 있는 경우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u>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u>을 할 수 있다. ⑥ <u>고용노동부장관</u>은 제5항의 <u>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u>할 때에는 <u>공인노무사회</u>에 그 공인노무사의 <u>등록을 명</u>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을 취소</u>하여야 한다. 2. 제9조에 따라 <u>폐업신고</u>를 한 경우 4. <u>사망</u>한 경우 1. 제4조에 따른 <u>결격사유</u>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u>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u>를 거쳐 그 <u>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1. 제6조에 따른 <u>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4(등록취소 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u>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u>하면 행정사회에 그 행정사의 <u>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u>소속 공무원에게</u>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u>조사하게 할 수 있다.</u> 제12조(등록증의 발급) ① 행정사회장은 행정사업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u>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u> 행정안전부령	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u>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u>를 거쳐 그 <u>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u>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u>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u>소속 공무원에게</u>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u>조사하게 할 수 있다.</u>	제25조(지도·감독 등)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u>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u>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u>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u>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u>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행정사회에 재발급을 신청</u>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u>등록증을 대여</u>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u>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u>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등록증의 대여</u>를 <u>알선</u>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사의 <u>등록을 취소한 경우</u>에는 행정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u>행정사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u>을 <u>알려야 한다</u>.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u>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u>.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u>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u>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u>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u>을 <u>알려야 한다</u>.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	<u>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u>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등록증을 다시 발급</u>받아야 한다.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u>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u>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u>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u>.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u>금지한 행위를</u> <u>알선</u>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u>등록을 취소한 때</u>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u>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u>.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른 <u>등록거부</u>와 제11조의2제3호 및 제11조의3에 따른 <u>등록취소에 관한 사항</u>을 심사하기 위하여 <u>행정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u>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등록을 한 후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u>시·군·구 단위</u>에 <u>사무소를 설치</u>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u>업무를 시작</u>하면 <u>지체 없이 행정사회에 신고</u>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의 사무소는 <u>한 곳</u>으로 한다.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u>등록거부</u>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u>등록취소에 관한 사항</u>을 심사하기 위하여 <u>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u>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u>지방법원의 관할 구역</u>에 <u>사무소를 설치</u>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u>업무를 시작</u>하면 <u>지체 없이</u>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u>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u>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u>한 곳</u>으로 한다.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u>등록거부</u>와 제19조에 따른 <u>등록취소에 관한 사항</u>을 심사하기 위하여 <u>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u>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u>1개</u>의 사무소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④ 행정사는 그 직무를 <u>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u>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u>합동사무소를 설치</u>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는 <u>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u>.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⑥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행정사회는 <u>사무소의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등록증을 재발급</u>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u>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u>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u>합동사무소를 설치</u>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u>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u>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u>.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u>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用)을 높이기 위하여</u>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u>합동사무소를 설치</u>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u>등록사항이 변경</u>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u>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u>.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u>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u>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또는 종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u>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u>
⑧ 제6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7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지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⑨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u>폐업한 경우에는</u> 본인, <u>사망한 경우에는</u>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u>행정사회에 신고</u> 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u>폐업한 경우에는</u> 본인, <u>사망한 경우에는</u>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u>대한법무사회회에 신고</u>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u>휴업하려면 행정사회에 신고</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u>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u>휴업하려면</u>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u>대한법무사회회에 신고</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u>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u>휴업을 했을 때에는</u>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u>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u> 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등록변경의 통지) 행정사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u>통지</u>하여야 한다.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u>등록과 품위 향상,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u>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u>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u>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u>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u>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 및 <u>폐업에 관한 사항</u>을 지체없이 <u>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u>하여야 한다.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u>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u>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둔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사법 개정안」	유사 입법례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 다)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u>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u>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u>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명령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폐업·사망·취소명령(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⁸⁾로, 결격사유 해당·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해당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⁹⁾로 구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결격사유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¹⁰⁾라는 개념상

8) 개정안 제11조의2(필요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
3.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9) 개정안 제11조의3(임의적 등록취소)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안 제11조(등록 거부)에서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¹¹⁾ 유사 입법례¹²⁾와 같이 결격사유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하되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3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을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규정¹³⁾하고 있으나, 이는 안 제11조의2에서 등록취소명령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의4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등록취소 명령권과 소속 공무원을 통한 조사권을 규정¹⁴⁾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등록심사위원회의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개정안 제11조(등록거부) ① 행정사회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12) 「법무사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 13) 개정안 제13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1조의2제3호 및 제11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생략)
 - 14) 개정안 제11조의4(등록취소 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사회에 그 행정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사로 등록된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심사사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행정사의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4조는 행정사로 하여금 시·군·구 단위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¹⁵⁾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규정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의 다른 조항에서는 행정사회가 등록신청, 사무소 이전신고, 폐업 및 휴업 신고를 받은 사항의 통보 대상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있어,¹⁶⁾¹⁷⁾¹⁸⁾ 사무소 설치 단위와 신고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정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 제13조는 현행 조 제목과 제1항~제3항까지의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변경¹⁹⁾하였으나, 제36조제1항제2호²⁰⁾도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의

15) 개정안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등록을 한 후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시·군·구 단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개정안 제10조의2(등록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17) 개정안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행정사회는 사무소의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종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18) 개정안 제17조의2(등록변경의 통지) 행정사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9) 개정안 제13조(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처벌을 규정하면서 ‘신고확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제13조와 함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
- 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 「행정사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②·③ (생략)

2. 행정사 자격 없는 자의 행정사 업무 수행(또는 행정사 업무수행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현행	개정안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u><신설></u>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3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는 표시·광고를 한 자</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려는 것임.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이에 따라 「행정사법」은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²¹⁾하면서, 제3조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으며,²²⁾ 제36조에서는 제3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²³⁾하고 있음.

21)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3) 「행정사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과 유사한 자격사법인 「법무사법」 및 「공인노무사법」을 살펴보면, 동 법률들은 「행정사」법의 규정 외에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또는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한다는 뜻을 표시·기재(또는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금지되는 행위임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²⁴⁾

-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지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의2.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24) 「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비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업무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은 타 자격사법의 입법례와 같이 「행정사법」에도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행정사 자격 없는 자의 부정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행정사 및 행정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36조제2항제7호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는 표시·광고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3항은 금지행위를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처벌규정이 금지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을 한 자
 -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 4.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 ③ 삭제 <2010. 5. 25.>

3. 벌칙 및 몰수·추징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제36조제1항제2호 : 주제 1과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보고함. - ‘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개정 필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u>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u> 행정사업무를 한 자	1. <u>행정사업무등록 또는 법인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u> ----- -----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 6.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	

현행	개정안
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u><신 설></u> ※ 제36조제2항제7호 : 주제 2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보고함. -‘제2조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 필요 <u><신 설></u> <u><신 설></u>	7.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는 표시·광고를 한 자 8.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된 자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수료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실무교육수료증을 제출한 자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	<u>10. 행정사의 자격이 없이 행정사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u> <u>11. 행정사회(지방행정사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u><신 설></u>	제36조의2(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현행	개정안
<신설>	본다. 제36조의3(몰수·추징) 제36조, 제36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첫째, 제25조²⁵⁾제1항의 실무교육 받지 않고 행정사사무소개설 또는 행정사법인 구성원이 되거나(안 제36조제2항제7호), 실무교육수료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실무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행위(안 제36조제2항제8호), 행정사 자격 없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하는 행위(안 제36조제2항제9호), 행정사회(지방행정사회 포함)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6조제2항제9호).

둘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25)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행정사법」에 따른 벌칙 규정(현행 및 개정안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²⁶⁾

[개정안에 따른 신설 처벌 규정]

신설 조항	처벌 사항	벌칙
안 제36조제2항 제8호 신설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u>행정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u> 하거나 <u>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u> 된 자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u>행정사 업무를 시작</u>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u>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u>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36조제2항 제9호 신설	○제25조제1항에 따른 <u>실무교육수료증을 거짓으로 작성</u> 하거나 <u>거짓으로 작성된 실무교육수료증을 제출</u> 한 자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u>행정사 업무를 시작</u>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u>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u> .	
안 제36조제2항 제10호 신설	○행정사의 <u>자격이 없이</u> 행정사회에 그 <u>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u> 을 한 자	

26)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신설 조항	처벌 사항	벌칙
안 제36조제2항 제11호 신설	○ <u>행정사회</u> (지방행정사회를 포함한다)의 <u>임직원이</u> <u>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u> 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u>비밀을 누설</u> 한 자	
안 제36조의2신설	○ <u>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u> <u>청탁 또는 알선</u> 을 한다는 명목으로 <u>금품·향</u> <u>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u> 한 자 또는 <u>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u> <u>하게 할 것을 약속</u> 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안 제36조의3	○ <u>제36조, 제36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u> <u>정을 아는 제3자</u> 가 받은 <u>금품이나 그 밖의 이</u> <u>익은 몰수</u> 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u>가액을 추징</u> 한다.	몰수·추징

동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을 통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²⁷⁾으로 법률로서,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실무교육, 행정사업무등록, 행정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해당 절차에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은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동 행위들을 처벌하고 또한 동 행위들을 포함하여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7) 「행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개정안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이 타 자격사법의 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바, 타 자격사법에 따른 처벌과의 형평성, 타 자격사법에도 규정해야 할 필요성, 타 자격사법과 달리 「행정사법」에 규정해야 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36조제2항제8호~제11호의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8호는 행정사 업무 등록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법무사법」은 연수교육을 법무사 업무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는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고 한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²⁸⁾ 「공인노무사법」은 연수교육 미이수를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대상²⁹⁾으로 하는 외에 교육을 받지 않고 한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³⁰⁾

28) 「법무사법」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9) 현행 「행정사법」도 행정사가 업무개시 후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에 대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사법」 제3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생략)

30)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 제9호는 실무교육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안 제10호는 행정사 자격이 없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법무사법」 및 「공인노무사법」은 이에 해당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형법」에서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처벌 규정³¹⁾을 두고 있음.

안 제11호는 행정사회(지방행정사회 포함)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법무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법무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금지와 위반시 처벌을 규정(처벌은 「공인노무사법」만 규정)하고 있으나,³²⁾³³⁾³⁴⁾ 대한법무사협회나 지방법무사협회, 공인노무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⑥ (생략)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③~⑤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생략)

② (생략)

31)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사회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변호사법」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 ‘공직퇴직변호사의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³⁵⁾

둘째, 안 제36조의2와 관련하여, 「법무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변호사법」은 개정안과

2.~4. (생략)

②·③ (생략)

34) 현행 「행정사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생략)

③ (생략)

35) 「변호사법」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동일한 규정³⁶⁾을 두고 있음.

동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1년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범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제2조³⁷⁾에 최초 규정되었고, 이후 1973년 「변호사법」³⁸⁾으로 흡수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2008년부터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³⁹⁾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사건브로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변호사법」에 관련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판시⁴⁰⁾한 바 있음.

동 규정이 제정되던 1961년에 비하여, 현재는 행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전문자격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동 자격사들이

36)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37) 「법률사무취급단속법」(법률 제751호, 1961.10.17., 제정·시행) 제2조(청탁등 명목의 금품수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8)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1973.1.25., 일부개정·시행) 제54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9)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참고

40)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외에 「행정사법」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사건브로커 행위가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규정은 법문상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특정 자격사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여러 자격사법에 규정하는 경우 동일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36조의3(몰수·추징)과 관련하여, ‘몰수’란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⁴¹⁾임. 「형법」 제48조⁴²⁾에 따르면 판사에게 몰수 재량권이 부여된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며, 「형법」상 몰수와 달리 필요적 몰수이거나 몰수대상·방법·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⁴³⁾

41)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4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43)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670.,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2020. p.530. 참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6조의3은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벌칙 전체(현행 및 개정안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와 관련하여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고⁴⁴⁾, 「공인노무사법」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9

44) 「법무사법」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